

교원연구년제 운영규정

제정 2011.08.01

제정 2014.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연구활동(학술연구와 산학협력연구)(이하 “연구활동”이라 한다.)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원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본 대학의 수업 등 일정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제3조(연구년의 기간) ①연구년의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이내로 한다.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구년 기간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자격) ①연구년 수혜교원(이하 “연구교원”이라 한다.)은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7년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

②연구교원은 제6조제2항과 같은 뚜렷한 연구계획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③교무위원으로 재임 중에는 연구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④휴직기간은 계속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연구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복귀일로부터 7년 이상 근속하여야 연구교원을 재신청 할수 있다.

제5조(신청) 연구교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신청서를 연구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 ①연구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②교비지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연구과제가 예정된 교원은 연구교원으로 간주하고 연구년 선정 대상에서 우선한다.

③연구교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2항에 해당되는 자
2. 연구계획이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된다고 인정된 자
3. 교원업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자
4. 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횟수가 적은 자

- 5.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 6. 상위 직급인 자
- 7. 연장자

제7조(인원) ①연구교원의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동일기간 중 전체 전임교원 총수의 1/20범위 내에서 전공당 1인 이내로 한다.

②전공(학과)당 교수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연구교원의 처우) ①연구교원은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교원에게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③연구교원에게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포함한다. 다만 연구년 기간 중의 승진은 유보된다.

제9조(연구교원의 의무) ①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②연구년이 만료된 교원은 복귀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3년 이상 본 대학에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재조치) 연구교원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은 면직의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 하여야 한다.
2.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중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강의대체) 연구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학과(부)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주관부서) 교원 연구년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13조(예외규정) 총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연구교원, □ 해외연수) 신청서

	결	담 당	팀 장	처 장	총 장
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학과(부) 전공	직 위	
임 용 일 자		년 월 일	근 무 년 수	년 개월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간)
신 청 사 유				
연 구 과 제 명				
연구비조달계획				
연구체류기관				
첨 부 서 류	1. 연구계획서 1부 2. 직무보완 대책 및 학과(부) 의견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초대장 등) 1부			

위와 같이 연구 및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①

우송정보대학 총장 귀하

직무보완 대책 및 학과 의견서

담당직무 보완대책					
학년도 / 학기	담당과목 및 시간		대 행 자		
	과 목 명	시 간	과 목 명	시 간	성 명
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해당학과 교수 의견서	
1.	담당직무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
2.	연구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
3.	기타 참고 의견

확 인	전 공 교 수 (전체 서명)	학과(부)장

연구 계획서

성명	인
소속 및 전공	
연구 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	
연구 방법 :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방안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I. 상기 본인은 연구년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연구년 기간 중 본 대학 교수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나. 대학의 급격한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본 대학의 복귀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순응한다.

다. 연구년의 목적이 본인 개인의 개발은 물론 대학의 장기적 개발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본인이 복귀 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복귀 후 3년 이내에는 퇴직하지 아니 한다.

II.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이 사회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상기 'I의 다'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보상적 성격의 지급액 및 연금부담금 중 법인부담액은 대학에 반환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우송정보대학총장 귀하